

유럽환경청과 유럽환경정보관찰네트워크 활동에 관한 법적 분석

-유럽의회/이사회 규칙 401/2009를 중심으로-

I. 서언

덴마크 Copenhagen에 본부를 두고 운영 중인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A)은 ‘규칙 1210/1990’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994년부터 정상적인 운영을 시작하였다. 유럽환경청은 유럽 국가들의 환경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바람직한 독립적 환경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되어 운영되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산하기관이다. 한편 유럽연합은 이와 동시에 동 규칙을 통하여 유럽의 환경상태와 환경상의 악영향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신속한 양질의 환경관련정보와 전문지식의 제공을 위하여 유럽환경정보관찰네트워크(European Environment Information and Observation Network: EIONET)를 설립하였다. 이로서 유럽환경청은 유럽환경정보관찰네트워크와 조화롭게 협력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현재 유럽연합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국가보

다도 이산화탄소 배출의 축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 에너지원의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만큼 유럽연합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이행에 적극적이며,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과 발효를 통해 환경문제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한 한국에게는 유럽연합이 좋은 본보기요, 또한 선의의 협력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아래에서는 ‘규칙 401/2009’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럽환경청과 유럽환경정보관찰네트워크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의 측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유럽연합의 환경보호노력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에게 있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시사점을 줄 것이다.

II. 유럽환경청의 주요 내용

1. 유럽환경청의 설립 목적

유럽환경청과 유럽환경정보관찰네트워크는 동 규칙과 유럽연합 차원의 환경프로그램에 명시된 환경보호 및 개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들에게 ①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조치의 결과를 평가하며 회원국 국민들이 환경상태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럽차원의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으며, 비교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② 이에 필요한 과학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¹⁾

2. 유럽환경청의 기능

유럽환경청은 동 규칙 제1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네트워크의 설립·운영 및 환경정보의 수집·가공·분석의 역할 수행, ② 환경정책 관련정보의 제공, ③ 환경조치 모니터링을 조력, ④ 환경조치 모니터링에 대한 조언의 제공, ⑤ 각 회원국 환경상태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평가, ⑥ 유럽차원의 환경정보가 비교가능하도록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환경정보 측정방법의 발전적인 통일화를 권장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²⁾

(1) 네트워크의 설립·운영 및 환경정보의 수집·가공·분석의 역할 수행

유럽환경청은 회원국과의 협력하에 동 규칙 제4조에 규정된 유럽환경정보관찰네트워크를 설립하여 관리하고, 동 규칙 제3조에 규정된 분야에 있어서의 환경관련 자료의 수집·가공·분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³⁾

(2) 환경정책 관련정보의 제공

유럽환경청은 EU와 그 회원국에게 건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정책을 구축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유럽환경청은 특히 환경 분야에 있어서의 조치와 입법에 있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성공적으로 확인·준비·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공한다.⁴⁾

(3) 환경조치 모니터링 조력

유럽환경청은 보고요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질문지의 개발, 회원국으로부터의 보고서의 가공, 결과의 분포 등을 포함한 환경조치



1) Regulation 401/2009(OJ 2009 L126/13), 제1조.

2) Regulation 401/2009, 제2조.

3) Regulation 401/2009, 제2조(a).

4) Regulation 401/2009, 제2조(b).

의 모니터링을 조력한다. 단, 이러한 활동은 유럽환경청의 다년간의 작업프로그램 및 보고요건 지원의 목적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⁵⁾

(4) 환경조치 모니터링에 대한 조언 제공

유럽환경청은 회원국의 요청이 있고 그것이 유럽환경청의 연례사업 프로그램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회원국에게 환경조치 모니터링 체제의 개발·설립·확장을 위한 조언을 제공한다. 단, 이러한 활동은 동 규칙 동 조에 의해 확립된 유럽환경청의 다른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조언은 회원국의 구체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전문가에 의한 재검토를 포함할 수 있다.⁶⁾

(5) 각 회원국 환경상태에 대한 정보 수집과 평가

유럽환경청은 각 회원국의 환경상태에 대한 정보를 기록·정리·평가하고, 회원국 영토 내 환경의 질·민감성 및 환경에 대한 악영향에 관한 전문가 보고서를 발행하며, 모든 회원국에 적용될 수 있는 환경정보를 위한 통일된 평가기준을 제공하고, 환경에 대한 정보문의처를 더욱 발전·

유지시키고, 환경에 대한 각 회원국의 입법조치를 확보하는 유럽환경청 기능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정보를 사용한다.⁷⁾

(6) 기타 기능

- ① 유럽환경청은 유럽 차원의 환경정보가 비교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환경정보 측정방법의 발전적인 통일화를 권장한다.⁸⁾
- ② 유럽환경청은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과 그 전문기구들에 의해 설립된 국제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의 유럽환경 정보의 통합을 촉진한다.⁹⁾ 이를 통해 국제 연합 내에서 유럽환경청은 유럽연합을 대표해서 활동한다.
- ③ 유럽환경청은 매 5년마다 특정 이슈들에 집중한 지표보고서들에 보충하여 환경의 상태·추세 및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한다.¹⁰⁾
- ④ 유럽환경청은 적절한 예방적 조치가 적합한 시기에 취해질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환경예측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촉진한다.¹¹⁾
- ⑤ 유럽환경청은 환경피해비용 및 환경의 예방·보호·복구 정책에 소요될 비용을 평가하



5) Regulation 401/2009, 제2조(c).
 6) Regulation 401/2009, 제2조(d).
 7) Regulation 401/2009, 제2조(e).
 8) Regulation 401/2009, 제2조(f).
 9) Regulation 401/2009, 제2조(g).
 10) Regulation 401/2009, 제2조(h).
 11) Regulation 401/2009, 제2조(i).

는 방법의 개발을 촉진하고,¹²⁾ 환경피해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최상의 기술에 대한 정보교환을 촉진한다.¹³⁾ 또한 유럽환경청은 동 규칙 제15조에 명시된 기관들 및 프로그램과 협력한다.¹⁴⁾

- ⑥ 유럽환경청은 특히 환경상태에 있어서 신빙성 있고 비교가능한 환경정보의 일반 대중으로의 광범위한 배포를 보장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새로운 텔레마틱 기술의 사용을 촉진한다.¹⁵⁾
- ⑦ 유럽환경청은 환경평가방법의 개발 및 최상의 현행 평가방법에 대한 정보교환과정에 있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지원하고,¹⁶⁾ 관련 환경연구결과에 관한 정보의 배포에 있어서 그리고 정책개발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형식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지원한다.¹⁷⁾

3. 유럽환경청의 주요 활동 영역

유럽환경청의 주요 활동 영역은 동 기관이 지

속가능한 개발의 맥락에서 ① 환경의 질, ② 환경에 대한 악영향, ③ 환경민감성의 관점에 있어서 현재의 그리고 예측가능한 환경상태를 기술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

유럽환경청은 유럽연합의 환경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사용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그 중요도는 ① 공기의 질 및 대기오염, ② 수질, 오염원 및 수원, ③ 토양·동식물·소생물권의 생태, ④ 토지사용 및 천연자원, ⑤ 폐기물관리, ⑥ 소음 공해, ⑦ 환경에 위해한 화학물질, ⑧ 연안 및 해양보호의 순이다. 특히, 초국경적·복수국가적·세계적 자연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며, 이에는 사회적·경제적인 입장이 고려된다.

유럽환경청은 환경법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한 유럽네트워크(IMPEL Network)를 포함한 다른 기관들과의 정보교환에 있어서 협력할 수 있다. 유럽환경청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현존하는 다른 기관 및 기구의 활동과의 중복을 피한다.¹⁸⁾



12) Regulation 401/2009, 제2조(j).
 13) Regulation 401/2009, 제2조(k).
 14) Regulation 401/2009, 제2조(l).
 15) Regulation 401/2009, 제2조(m).
 16) Regulation 401/2009, 제2조(n).
 17) Regulation 401/2009, 제2조(o).
 18) Regulation 401/2009, 제3조.

4. 유럽환경청의 법적 지위

(1) 법인격

유럽환경청은 법인격을 가지며, 모든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해 법인에게 부여되는 최대한의 법적 능력을 향유한다.¹⁹⁾

(2) 특권 및 면제

한편 유럽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European Union)가 동 기관에 적용되어 EU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향유한다.²⁰⁾

5. 유럽환경청의 구성

(1) 운영위원회

1) 설치

유럽환경청은 운영위원회(Management Board)를 가지며, 각 회원국으로부터 1명의 대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2명의 대표로 구성된다. 동 기관에 참여하는 각 회원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1명의 대표를 운영위원회에 추가적으로 둘 수 있다.²¹⁾

2) 의장의 선출

운영위원회는 그 회원국들 중 3년 임기의 의장을 선출하고, 자체 내규, 즉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운영위원회에서 각 회원국은 1표의 권한을 가진다. 운영위원회는 자체 내규에 따라 그 행정적 결정을 위임할 사무국의 임원을 선출한다.²²⁾

3) 의사 결정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구성원의 2/3 다수결로 채택된다.²³⁾

4) 활동

① 다년간 사업프로그램의 채택

운영위원회는 동 규칙 제3조 제2항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다년간 사업프로그램을 채택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동 규칙 제9조상의 유럽환경청장(Executive Director)이 제출한 초안을 근거로 이용하며, 동 규칙 제10조상의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와 협의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다. 다년간 사업프로그램은 유럽연합의 연례예산절차를 해함이 없이 다년간 예산추정치를 포함한다.²⁴⁾

② 연례 사업프로그램의 채택

다년간 사업프로그램하에 운영위원회는 유럽환경청장이 과학위원회와 협의하고 유럽연합



19) Regulation 401/2009, 제7조.

20) Regulation 401/2009, 제16조.

21) Regulation 401/2009, 제8조 제1항.

22) Regulation 401/2009, 제8조 제2항.

23) Regulation 401/2009, 제8조 제3항.

24) Regulation 401/2009, 제8조 제4항.

집행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출한 초안에 근거하여 매년 자신의 연례 사업프로그램을 채택한다. 이 연례 사업프로그램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연중 조정이 가능하다.²⁵⁾

③ 연례 보고서의 채택

운영위원회는 유럽환경청의 활동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는 늦어도 6월 15일까지 유럽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감사원 및 각 회원국에게 송부한다.²⁶⁾

(2) 유럽환경청장

1) 임명

유럽환경청장은 유럽환경청의 수장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의해 임명된다. 유럽환경청장의 임기는 5년이며, 재임이 가능하다. 유럽환경청장은 동 기관을 법적으로 대표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진다.²⁷⁾

2) 직무

유럽환경청장은 ① 운영위원회가 채택한 결정 및 프로그램의 적절한 준비 및 실행, ② 유럽환경청의 일반 행정업무, ③ 동 규칙 제12조 및 제13조상의 예산관련업무, ④ 동 규칙 제2조(h)

에 명시된 보고서의 작성 및 발행, ⑤ 동 규칙 제8조 제4항 및 제5항에 명시된 기관 직원 관련 제반 업무수행, ⑥ 동 규칙 제10조에 따른 기관 과학스태프 고용에 있어서의 과학위원회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수행한다.²⁸⁾

또한 유럽환경청장은 자신의 활동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에 설명할 책임을 지며,²⁹⁾ 유럽환경청의 예산을 집행한다.³⁰⁾

(3) 과학위원회

1) 직무

운영위원회와 유럽환경청장은 동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자신에게 제출되는 유럽환경청의 활동과 관련된 어떠한 과학적 문제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의 원조를 제공받는다. 그리고 이때 동 과학위원회의 의견은 공개되어야 한다.³¹⁾

2) 구성

과학위원회는 특별히 환경 분야에 있어서 자격을 갖춘 환경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며, 1회 재선이 가능한 4년 임기하에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이때 운영위원회는 특히 환경위원회의 활



25) Regulation 401/2009, 제8조 제5항.

26) Regulation 401/2009, 제8조 제6항.

27) Regulation 401/2009, 제9조 제1항.

28) Regulation 401/2009, 제9조 제1항.

29) Regulation 401/2009, 제9조 제2항.

30) Regulation 401/2009, 제13조 제1항.

31) Regulation 401/2009, 제10조 제1항.

동에 조력하기 위해 과학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과학적 분야를 고려하여야 한다. 동 과학위원회는 동 규칙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내규에 따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³²⁾

(4) 유럽환경정보관찰네트워크

1) 구성

유럽환경정보관찰네트워크는 ① 국내정보네트워크의 주요 요소, ② 각 회원국의 연락 대표자(focal points), ③ 토픽센터(topic centres)로 구성된다.³³⁾

2) 회원국의 주요 의무

① 자국 환경정보네트워크의 주요기관 공지의무

회원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의 자국 영토의 지리적 범위를 보장할 필요를 고려하여, 특히 동 규칙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분야에 있어서 자신의 환경정보네트워크의 주요기관을 유럽환경청에 지속적으로 공지한다. 이에는 유럽환경청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기관도 포함된다.³⁴⁾

② 환경관련 정보수집활동에 대한 협력의무
회원국은 적절한 경우에 유럽환경청과 협력

하고 자국의 정보를 수집·정리·분석함으로써 유럽환경청의 활동프로그램에 따라 유럽환경정보관찰네트워크의 활동에 기여한다. 또한 회원국은 초국경적 차원에서 이러한 활동에 협력할 수 있다.³⁵⁾

③ 국내 연락대표자의 지정

회원국은 유럽환경청과 제4항에 규정된 토픽센터를 포함한 유럽환경정보관찰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관에 제공되어야 할 국내적 환경정보를 조율하거나 송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히 제2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자국 내 설립된 그 밖의 기관 중에서 국내 연락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다.³⁶⁾

6. 유럽환경청의 재정

(1) 예산

운영위원회는 매년 회계년도에 따라 유럽환경청장이 작성한 초안에 기초하여 기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초안을 작성한다. 예산초안은 운영위원회에 의해 늦어도 3월 31일까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³⁷⁾ 한편 예산국은 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할당을 승인하여 기관



32) Regulation 401/2009, 제10조 제2항.

33) Regulation 401/2009, 제4조 제1항.

34) Regulation 401/2009, 제4조 제2항 전단.

35) Regulation 401/2009, 제4조 제2항 후단.

36) Regulation 401/2009, 제4조 제3항.

37) Regulation 401/2009, 제12조 제1항.

의 예산안을 채택한다.³⁸⁾

이처럼 예산안은 운영위원회에 의해 채택되며, 유럽연합의 일반예산안의 최종적 채택에 따라 최종예산으로 결정된다. 적절한 경우 예산안은 수정될 수 있다.³⁹⁾

(2) 예산의 집행

유럽환경청장은 기관의 예산을 집행하며,⁴⁰⁾ 운영위원회는 기관의 최종 결산보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⁴¹⁾ 유럽환경청장은 매년 회계연도에 맞추어 늦어도 7월 1일까지는 최종 결산보고서를 운영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유럽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감사원에 제출한다.⁴²⁾ 기관에 적용되는 재정적 규율은 운영위원회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협의한 후 채택된다.⁴³⁾

7. 다른 기관과의 협력 의무

(1) 유럽연합 다른 기관 및 프로그램과의 협력의무

유럽환경청은 특히 공동연구개발센터(Joint

Research Centre), 유럽통계청(Statistical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그리고 유럽연합의 환경연구 및 개발프로그램 등 유럽연합의 다른 기관 및 프로그램들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구축한다.⁴⁴⁾

(2) 유럽우주기구·경제협력개발기구·유럽심의회·국제연합전문기구 등과의 협력의무
유럽환경청은 유럽우주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심의회(Council of Europe), 그리고 국제연합(UN)과 특히 국제기상기구(WMO)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그 전문기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⁴⁵⁾

(3)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와의 협력가능성
유럽환경청은 동 기관과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의 기관들이 제공하는 정보, 전문지식, 정보분석·평가수집의 방법 등이 상호 이익이 되고 유럽환경청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이들 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다.⁴⁶⁾



38) Regulation 401/2009, 제12조 제4항.
 39) Regulation 401/2009, 제12조 제5항.
 40) Regulation 401/2009, 제13조 제1항.
 41) Regulation 401/2009, 제13조 제4항.
 42) Regulation 401/2009, 제13조 제6항.
 43) Regulation 401/2009, 제14조.
 44) Regulation 401/2009, 제15조 제1항.
 45) Regulation 401/2009, 제15조 제2항.
 46) Regulation 401/2009, 제15조 제3항.

(4) 활동의 중첩 회피

유럽환경청은 특히 동 규칙 제15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 명시된 기관들과 그 활동의 중첩을 피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⁴⁷⁾

8. 유럽환경청의 직원

유럽환경청의 직원은 유럽연합의 관료(officials) 및 그 밖의 직원(servants)에게 적용되는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유럽환경청은 자신의 직원에 대해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며, 운영위원회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의 합의에 근거하여 적절한 시행규칙을 도입한다.⁴⁸⁾

9. 유럽사법법원의 관할권

(1) 계약적 책임의 경우

유럽환경청의 계약적 책임은 문제가 된 계약에 적용되는 법에 의해 규율된다. 유럽사법법원은 동 기관이 체결한 계약상 포함되어 있는 중재 조항에 의거하여 관할권을 가진다.⁴⁹⁾

(2) 비계약적 책임의 경우

유럽환경청의 비계약적 책임의 경우, 동 기관

은 회원국의 법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일반원칙에 준하여 동 기관 자신이 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야기한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한다. 이 경우 유럽사법법원은 어떠한 손해의 배상 문제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⁵⁰⁾

(3) 직원의 개인적 책임의 경우

유럽환경청에 대한 직원의 개인적 책임의 경우에는 기관 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의해서 규율된다.⁵¹⁾

10. 유럽환경청에의 가입

유럽환경청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지만 동 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들과 공동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⁵²⁾ 즉 유럽환경청은 유럽연합의 환경관련 행정기관으로서 유럽연합 가입국은 자동적으로 동 기관에 참가할 수 있으며, 유럽연합 비회원국일지라도 유럽연합이 합의할 경우에는 동 기관에의 참여가 허용되고 있다. 2004년의 유럽연합의 확대 이전에 13개 가입후보국에게 그 참가자격을 부여한 예는 유



47) Regulation 401/2009, 제15조 제4항.

48) Regulation 401/2009, 제17조.

49) Regulation 401/2009, 제18조 제1항.

50) Regulation 401/2009, 제18조 제2항.

51) Regulation 401/2009, 제18조 제3항.

52) Regulation 401/2009, 제19조.

럽연합의 행정기관으로서 유럽환경청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2009년 2월 현재 유럽환경청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3개국(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유럽연합 1개 가입후보국(터키), 스위스를 포함하여 총 32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Ⅲ. 시사점

이상에서는 유럽환경청과 유럽환경정보네트워크의 설립과 운영 시스템을 중심으로 유럽연합의 환경정책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TEU)에 의해 유럽연합(EU)이 창설될 즈음에 유럽은 이미 환경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오늘날에는 2009년 12월 1일 리스본 조약이 발효됨과 함께 환경에 대한 유럽연합의 적극적 활동이 국제사회의 환경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원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유럽연합은 친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전체 에너지 사용의 20%까지 확보하도록 법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연합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특별하다. 유럽연합이 추구하고 있는 친환경정책은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다음

세대에게 건전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더 늦기 전에 환경보전의 초석을 놓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도 모두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국가의 입장에서는 교토의정서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고, 나아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등을 통하여도 지역적 내지 국제적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국제공동체적 의식을 제고하여 전세계적인 환경보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기존의 다자간환경협약(MEAs)에 많은 국가들이 가입하는 방법을 통하여 동 협약의 보편적 효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초국가적 국제환경기구를 창설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적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럽환경청과 유럽환경정보관찰네트워크 시스템은 개별 국가적 차원 그리고 국제공동체적 차원 모두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협력에 있어서 사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도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국내적으로 환경보호정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동아시아적인 차원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환경정책의 협력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김 두 수

(해외입법조사위원, 법학박사)